

[요약본]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26. 6. 30.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용

사법정책연구원은 2026. 6. 30.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 하였습니다. 이 요약본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위 연구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연구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에는 각주와 참고문헌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본 요약본이 아니라 연구보고서의 해당 페이지를 인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1장 서론

형사판결서는 형사재판의 결론인 판결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면서, 판결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당사자, 피해자 및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할 것이나,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작성에 지나친 노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저해할 염려도 있으므로, 형사판결서에는 판결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기재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우리 법원은 오랜 기간 형사판결서의 적정화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하여왔고, 종래의 논의 및 연구를 종합하여 2014. 7. 4.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였으나, 예규 제정 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기존의 적정화 방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고, 예규에 따른 적정화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이 재판실무에 충분히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우리 형사판결서의 모습 및 기존 적정화 방안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의 형사판결서와 관련한 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형사판결서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적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형사판결서의 주요한 부분인 판결 이유 부분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선을 포함하여 판결서 전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기본적으로 제1심 형사판결서의 이유 기재를 그 대상으로 하되, 유죄의 형사판결서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 관련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을 그 변화과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

리고 외국의 제도 및 판결서 작성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고, 법관 및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아울러 검토하여 형사판결서 적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 관련 현황

제1절 서설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련 현황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형사재판이 어떠한 위치와 상황에 있는지를 조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 관련 현황을 개관하고, 우리의 형사재판에 대한 법관들의 평가 등을 비교·분석하여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의 적정화가 필요한 이유와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외국과 비교

국내 언론 기사나 연구자료 등에서 자주 인용되는 세계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는 법치주의 지수라는 지표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사법절차를 평가·분석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시스템의 적시성 및 효율성 부문은 세계 143개국 중에 3위에 해당하는바, 우리의 형사재판은 국제비교지표상 적시성 및 효율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기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관 및 사건 관련 비교자료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관 1인당 민사·형사 본안 사건 수는 주요 대륙법계 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일본과 비교할 때 2~5배 정도 많은 편이다. 영국(잉글랜드·웨일즈)의 경우 정규 직업 법관의 숫자는 적은 편이나, 다수의 비상근 판사 및

치안 판사들이 사건처리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할 때, 대다수 사건은 주 법원에서 처리되고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인정 등에 따라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도 낮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법관의 수에도 불구하고 적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국제 비교지표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바, 그 이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의 어려움과 부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설문 결과 법관들은 형사재판부 업무의 업무량 및 부담감이 높다고 보고 있고, 형사판결서 작성이 차지하는 부담도 비교적 많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형사판결서의 길이도 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장문의 판결서 작성이라는 실무가 형사재판부의 부담이나 판결서 작성과 관련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개별 법관의 의자나 노력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이거나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3절 시사점

인적·물적 사법 자원의 확충이 쉽지 않고, 공판심리 시간의 단축 등도 적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을 높이면서, 공판심리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형사판결서 적정화를 통해 형사재판 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사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비교지표를 보더라도 형사사건 처리의 적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면에 형사재판부 법관들에게 지워진 과중한 부담이 있다. 우리의 형사재판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법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근본적이

고 구조적인 위험성과 각종 재판지연 요인들은 기존의 사건처리 능력을 더는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앞서 본 여러 위험에 의해 사법역량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사법 자원의 적정하고도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제적인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제3장 우리나라 및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제1절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변화과정

I. 형사소송법 등의 판결 이유 기재방식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재판의 이유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규정은 제한적으로 존재하였다.

유죄판결의 이유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의 이유로 구성된다. 무죄판결의 경우 실무상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한 후, 어떠한 사유로 무죄가 되는지를 기재한다.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판결의 이유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한 후, 어떠한 사유로 각 근거 조문에 해당하는지 취지를 기재한다.

국민참여재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판결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하고,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 및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II. 형사판결서 기재방식의 변화과정

형사소송법 제정 무렵 형사판결서의 유죄 부분은 형재와 같이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증거의 요지 부분은 증명의 대상을 일부 구분하여 특정하였으나, 증거의 표제와 존재 형식만을 기재하면서 그것이 판시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개괄적인 기재만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은 적용될 법령과 그에 따른 적용 결과를 하나의 문장으로 적용 순서에 따라 기재하면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하였으나, 양형의 이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형사판결서는 형사합의 판결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정 무렵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과 유사하게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작성하고 법령의 적용 부분은 문장으로 적용이유 등을 기재하면서 선고형까지 도출하였고, 양형의 이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류적인 실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 단독 판결의 경우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법령을 적용 순서에 따라 순차 나열하는 형태로 기재하면서 적용이유와 결과 등의 기재를 대부분 생략하는 판결이 확인된다.

그 밖의 피고인과 변호인 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항을 두어 상세한 판단을 기재한 사례가 있으나,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과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장 외 그 밖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실무로 파악된다. 설령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정의 기재사항인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형사판결서를 작성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도 별도로 상세한 판단을 기재

한 사례가 있었으나,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보이고, 기재를 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해당 형을 선택하는 이유로서 기재되는 형식이 보인다.

무죄판결의 이유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는 것이 실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유죄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법정의 기재사항만을 기재하는 것이 주류적인 기재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적 경향은 유죄의 형사판결서에 명시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정의 요구사항과 형식에 가급적 부합하는 취지로 판결서를 작성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형사공판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형사사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할 것이다.

이후 1991년 재판예규 제316호로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이 제정되고, 1998년 재판예규 제625-1호로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이 제정되었다. 예규의 증거의 요지를 핵심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법령의 적용에 있어 문장식 기재방식을 나열식 기재방식으로 변화시킨 부분은 재판 실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졌다. 다만, 실무상 비교적 길고 상세하게 작성되던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증거 배치의 취지만을 기재하고, 이유 기재를 생략하는 등 간이화된 기재방식을 제시하였으나,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간이화하는 변화는 재판 실무에서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2000년대 초중반 무렵부터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형사사법의 주도권이 법원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형사소송의 전

면에 등장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기재하는 형태로 실무가 변화해 가면서 유죄의 형사판결서를 중심으로 형사판결서의 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실무도 확산되었고,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양형 이유의 기재 분량도 늘어났다.

이에 2014년 재판예규 제1474호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이하 ‘적정화 예규’라 한다)가 제정되었다. ‘설득은 법정에서, 판결은 간결하게’라는 이념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 및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등 내용적 부분을 생략하거나,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재하는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예규의 내용은 재판 실무에서 일정 부분 수용이 된 측면이 있으나, 형사판결서의 내용적인 부분을 간이화하는 방향성은 실무에 충분히 수용되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판결서 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적정화 예규 제정 후에도 이어졌고, 일부 복잡사건의 경우에는 수천 쪽에 이르는 판결도 존재한다.

제2절 형사판결서의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작성형식의 적정화는 각종 예규 등의 제정에 의한 적정화 방향에 맞추어 변화하였다.

그러나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기재사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기재방식이 변화하면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에 대한 기재가 늘어났고, 무죄판결은 간이화를 추구하는 예규에도 불구하고 길고, 자세한 기재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즉, 내용적 적정화는 예규 등을 통해 여러 작성방식이 제시되었으나, 실무상 안정적으로 그 기재방식이 정착되지 못하였다. 설문결과 적정화 예규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가 변호사들은 물론 법관들도 부족하고, 적정화 예규에 대한 법관들의 수용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적 적정화 특히 논증이나 증거 평가의 축약 또는 생략은 곧바로 판결 이유의 충실성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급심 법관으로부터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나,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이유 불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한 불복이나 공격을 받을 위험 부담을 고려하면 형사판결서를 길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서의 장문화 추세에도 상소율은 계속하여 상승 추세에 있는바 현재의 실무가 당사자들의 승복을 돕고, 상소율을 낮추는 등의 순기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정화의 당위성은 있다.

결국 형사판결서 작성 실무는 관행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형사판결서를 둘러싼 다양한 부담 및 평가 구조 속에서 형성된 법관들의 합리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화 논의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자세한 이유 설시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사건을 제도적으로 선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작성 기준 등을 마련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4장 외국의 형사판결서

제1절 미국

미국 연방법원의 경우 일정한 체크리스트 양식에 따라 유·무죄 여부, 형벌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형사판결서를 작성하고, A급 경죄 이상의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경우 체크리스트 양식에 따른 양형이유서가 작성되며, 형사판결서에 구체적인 유·무죄의 이유 등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배심재판에서는 판사는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배심원들도 평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다. 평결 후 양형심리를 거쳐 판사가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A급 경죄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이유서도 작성된다. 다만, 배심원들은 법률을 스스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판사가 배심원 지시로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법을 적용하여 유·무죄의 평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국 배심원 지시에는 증명할 사항과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리, 증명 원칙 등의 법률적 사항이 담기게 된다.

비배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법원의 유·무죄 판단 전에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므로, 비배심 재판에서는 법원에 의해 사실인정 및 법적결론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구성요건 및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어야 할 요건을 설명하고, 사실인정을 통하여 이를 포섭하고, 법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형식으로 작성되고, 당사자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경우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사실인정 및 법적결론 제안서(법원이 작성할 사실인정 및 법적결론서를 사전에 양 당사자가 제안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함)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는 등 당사자들에게 폭넓은 조력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미국은 체크리스트 형식의 간이한 형사판결서가 활용되나, 형사재판의 결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될 뿐, 법적판단이나 설명은 배심원 지시나 사실인정 및 법적판단 등으로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과 이유를 분리하고, 비배심재판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요청 등 그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유가 작성되는 점이나, 법률적 판단을 상세히 정리한 배심원 지시 등은 우리의 경우에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2절 영국

영국(잉글랜드·웨일즈)은 약식 범죄 등을 다루는 치안법원과 정식 기소 대상 범죄 등을 다루는 형사법원이 존재하고, 재판절차를 달리한다.

치안법원은 선발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치안판사들이 재판부를 이루어 법률가인 법률 조언자(Legal Advisor)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다만, 민감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치안법원 소속 직업 법관인 지역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한다.

치안법원의 유죄판결은 그 판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나, 법정에서 구술로 간결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고등법원에 법률적 문제에 관한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작성하는 사건 설명서를 통하여 그 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되고 있다. 다만, 직업 법관인 지역판사가 판결하는 일부 주요 사건들은 길고, 상세하게 판결이유가 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원은 원칙적으로 판사 1인의 주재하에 배심재판이 진행되고, 배심원 평결에 따른 유·무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유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판사는 양형에 대해서만 이유를 제시한다. 다만, 배심원 지시에 증명할 사항과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리, 증명 원칙 등의 법률적 사항만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요약 설명도 포함된다.

이러한 구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판결, 비배심재판인 치안법원 판결의 경우 고등법원에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 등은 우리의 경우에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3절 독일

독일의 경우 형사판결 선고로 위한 기간을 심리가

끝난 후 2주 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판결선고에 대해서는 구두로 판결 선고를 하고, 판결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5주(공판기일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2주,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공판기일 구간마다 2주씩 연장) 내에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위와 같은 사후판결 작성 제도와 결합하여 상소 포기가 있거나, 상소기간 내에 상소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단축판결이라는 간이한 형태의 형사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 후 별도의 신청이나 상소에 따라 서면 판결 이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작성하고, 그 이유 작성의 정도를 달리하는 제도는 독일 외에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유럽국가들에도 존재한다.

또한 독일은 우리의 약식명령과 유사한 형벌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 형벌명령은 일정한 범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발령이 가능하다.

이러한, 독일의 형사판결서는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보다 비교적 길고 자세하게 작성이 되고 있는바, 비교대상 국가 중 현저히 많은 법관의 수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독일은 우리와 비교할 때 사법자원이 풍부하나 그럼에도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 점과 사후에 판결서를 작성하되 상소제기가 없음을 전제로 간이한 판결서를 작성하게 하는 제도 등은 우리의 경우에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4절 프랑스

프랑스는 참심제를 기초로 직업법관과 배심원이 재판부를 이루는 중죄법원과 직업법관으로 구성된 형사법원, 경죄법원, 경찰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죄법원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프랑스 중죄법원의

판결서에는 증거관계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과 같은 구체적인 판결의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배심재판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피고인이 왜 유죄로 인정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을 요구한 2010년 유럽인권법원의 판결(Taxquet v. Belgium) 이후 프랑스는 이유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유서에는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유죄 요소 및 양형 선택에 관한 요소가 기재된다.

형사법원은 재판지연 등을 고려하여 종래에 중죄법원의 관할에 속하였던 중죄사건 중 일부를 담당하는 법원으로, 직업법관으로 구성되고 배심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유서 작성 등 중죄법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경죄법원의 판결서에는 이유와 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약식명령의 경우 약식명령을 할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유죄의 판단근거, 양형의 이유뿐 아니라, 구속피고인의 구금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까지 간략히 기재하나, 실무상 관련 증거를 모두 적시하지 않고 간략하게 기재한다.

프랑스는 인접 국가인 독일과 비교할 때, 간결하고 짧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증거관계도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죄법원의 경우 질문지나 이유서를 통해 배심원의 판단을 판결서에 담는 방식은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검토해볼만 하다.

제5절 일본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구조로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구조로 판결서가 작성되고 있고, 변호인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인정의 보충 설명’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

는 항목을 두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기재하고 있다.

판결서 작성에 관하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등을 판결서에서 인용할 수 있게 하고, 간이공판절차 또는 즉결재판절차에 의해 심리를 거친 사건의 경우 공판조서의 증거의 표목을 인용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

지방법원소 및 간이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제기가 없거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내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판결서 등본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조서판결이라 불리는 주문,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가 기재된 조서의 작성으로 판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은 우리와 유사하나, 조서판결과 같이 불복이나 신청을 전제로 판결서 작성을 간이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도 그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6절 종합적 검토

외국의 구체적인 판결서 작성방식 자체는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큰 범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송 당사자의 합의를 판결 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의 유죄협상 등이 그러하다. 두 번째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당사자의 불복 여부를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비교적 소수의 법관으로 적시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한 사법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판결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활용될만한 판결서 간이화 제

도가 없어, 형사사법의 효율적 운용은 개별법관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인바, 현재의 형사재판 효율성에 관한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법적인 사향을 통한 보완책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5장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제안

제1절 형사판결서 적정화의 방향성

과거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및 개선 방향에도 불구하고 내용적 부분에 관하여는 양적인 증가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형사판결서 기재 내용 증가의 주된 원인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형사재판에서 심리의 중심이 수사기록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별 재판부에서 심리의 중심인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측면이 크다.

결국 형사판결서 분량의 양적 확대는 법령, 제도 변화 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재판 실무에서 당사자들의 개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 법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측면이 있고, 공판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실무상 이루어지는 형사판결서 기재의 상당 부분을 생략하거나 간이화하는 취지의 개선책은 재판부가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기재하게 된 동기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판결서 적정화 논의는 핵심적인 사향을 중심으로 간이하게 쓰는 방법론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고, 개별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상세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도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와 같은 이유 설시가 요구되지 않는

사건을 선별하여 판결이유의 설시를 축소·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성하는데 있다.

그리고 작성형식 등에 관한 수용성이 높은 개선책을 발굴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에 맞는 수요자 친화적 작성 형식을 개발하여 작성의 편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제2절 상소 제기에 따른 판결 이유의 보충 제도의 제안

이 절에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제도는 상소 제기에 따라 판결의 이유를 보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구성하였고, 판결선고 시에는 법정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간이하게 판결서를 작성하되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별도의 서면으로 판결 이유를 보충할 수 있게 한다.

이 제도는 독일의 판결 선고 후 판결서를 작성하는 제도와 결합하여, 상소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간이하게 판결서를 작성하는 단축판결에 착안점을 두고, 판결 선고 시에 판결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불복 여부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형사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여 사법자원을 적정하게 재분배하자는 취지로 제안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는 법관 및 변호사에 대한 설문결과 법관의 경우에도 반대의 의견이 많았고 변호사의 경우 반대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제도는 현재와 같이 법정기재사항 등 판결서의 요건을 갖춘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필요한 경우 선고 시점에 구술로 설명을 보충하고, 상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상소 제기 후 2주 내에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보충서면은 판결서의 일부로 재판한 법관들이 서명 날인을 하는 등 판결서에 준

하여 작성을 한다.

판결서의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은 보충이나 기재의 수정 등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판결서의 주문 및 이유와 모순되거나,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수정이나 보충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구두로 설시한 이유와 모순이 발생할 경우 부적절한 경우이기는 하나, 서면의 판결서를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 기간은 상소제기일로부터 2주 내로 하였고, 그 기간은 엄격히 준수될 필요성이 있다.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대법원규칙에 적용 제외 사유를 위임하도록 제안하였고, 판결이유의 보충이라는 명목으로 구속이 장기화하거나, 상소심의 구속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구속사건을 그 제외 대상으로 제안한다.

제3절 조서의 기재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제도의 제안

이 절에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제도는 조서의 기재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제도이다. 이는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되는 쟁점이 단순하고, 결론이 명백한 간단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서 상소 제기가 없는 경우 서면 작성의 부담을 전면적으로 덜어내고,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간이공판절차를 활성화하여 재판의 적정과 신속을 도모하고, 판결서 작성에 관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에 있다.

이는 일본의 조서판결이라는 판결 방식에 착안점을 두었으나, 일본과 같이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사건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자백 및 증거조사 등의 간단한 절차 진행이 가능한 간이공판절차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는 법관 및 변호사에 대한 설문결과 법관의 경우에는 찬성의 의견이 많았으나,

변호사의 경우 반대의 의견이 많았다.

제1심 간이공판절차 결정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구술로 판결을 선고한 후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주문, 범죄사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기재한 공판조서를 만들어 이를 판결서로 갈음하되, 조서판결이 판결서를 갈음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사무관등 외에 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대법원규칙에 적용 제외 사유를 위임하도록 제안하였고, 쟁점이 단순하고, 결론이 명백한 간이한 처리가 가능한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구속사건의 경우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등 법령이 양형 이유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를 적용 제외 사유로 제안하였다.

제4절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이유 기재의 특례에 관한 제안

이 절에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제도는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는 경우 판결서의 기재 중 증거의 증명력 및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 배심원의 평결 결과만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필요성과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하는 사건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는 통상의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장에 대한 판단의 설시를 기재할 필요성이 적은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는 법관 및 변호사에 대한 설문결과 법관의 경우에는 찬성의 의견이 매우 많았

고, 변호사의 경우에도 찬성의 의견이 약간 많았다.

이 제도는 배심원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사실상의 주장 및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는 경우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배심원의 판단을 인용하는 형태로 그 주장을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제5절 형사판결서 작성형식의 개선 등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증거목록의 순서나 증거서류의 편철순서에 따라 기재하는 기재방식을 제안한다. 현재의 실무는 증거의 요지를 인증, 서증, 증거물인 서면, 증거물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검찰의 증거를 경찰의 증거보다 앞서 제시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증거는 묶어서 기재하고 있다. 이는 증거를 종류별로 파악하기 쉬운 방법이나, 증거의 배치가 기록의 편철순서와 무관하게 되어, 기록과 대조하여 증거의 요지를 파악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개선안에 의하면, 기록이나 증거목록의 순서에 따르므로, 기록과 함께 증거를 파악하기 쉽다. 또한 증거가 어떠한 순서로 수집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판결서에 담기게 된다. 이는 새로 도입된 형사전자소송의 전자사건의 증거의 요지 생성 기능이 증거를 목록의 순서에 따라 자동생성하는 것과도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적용이유 및 결과를 생략하여 기재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기재방식을 제안한다. 현재 대법원 예규에는 단독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유 및 결과의 생략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는바, 이 기재방식은 단독재판부에서 장기간 널리 활용되고 있고, 실무상 의미가 크지 않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판결서의 적정하고 신속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에 관하여 양형인자의 기재를 중심으로

한 기재방식을 제안한다. 현재 대부분의 판결이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권고형량 범위 내의 판결임에도 현재 양형기준 시스템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기재의 복잡성 및 정확성 검증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한 기재방식을 제안하여 양형기준에 기초한 양형의 이유 기재를 활성화하여, 양형기준의 정착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제6장 결론

형사판결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내용과 설득력을 갖추되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실무례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법관의 시간과 노력이 형사판결서 작성에 더욱 투입되게 되었고, 대법원 예규의 제정 등으로 개별 법관들의 판결서 작성방식의 적정화를 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실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높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훨씬 풍부한 사법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건의 성격이나 경중, 합의의 존재, 상소 제기 등 재판에 관련한 요소들을 일응의 기준으로 고려하여 사법제도 차원에서 이를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사법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비교법적으로 사법자원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 중 상소제기를 중심으로 한 판결 이유 보충 제도와 조서의 기재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조서판결 제도를 제안하였고, 그 밖에 국

민참여재판에 있어 이유기재의 특례 제도와 작성형식적 부분에 있어서 개선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사법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형사재판부 법관들의 무거운 서면 작성 부담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접근의 계기가 되어,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고양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